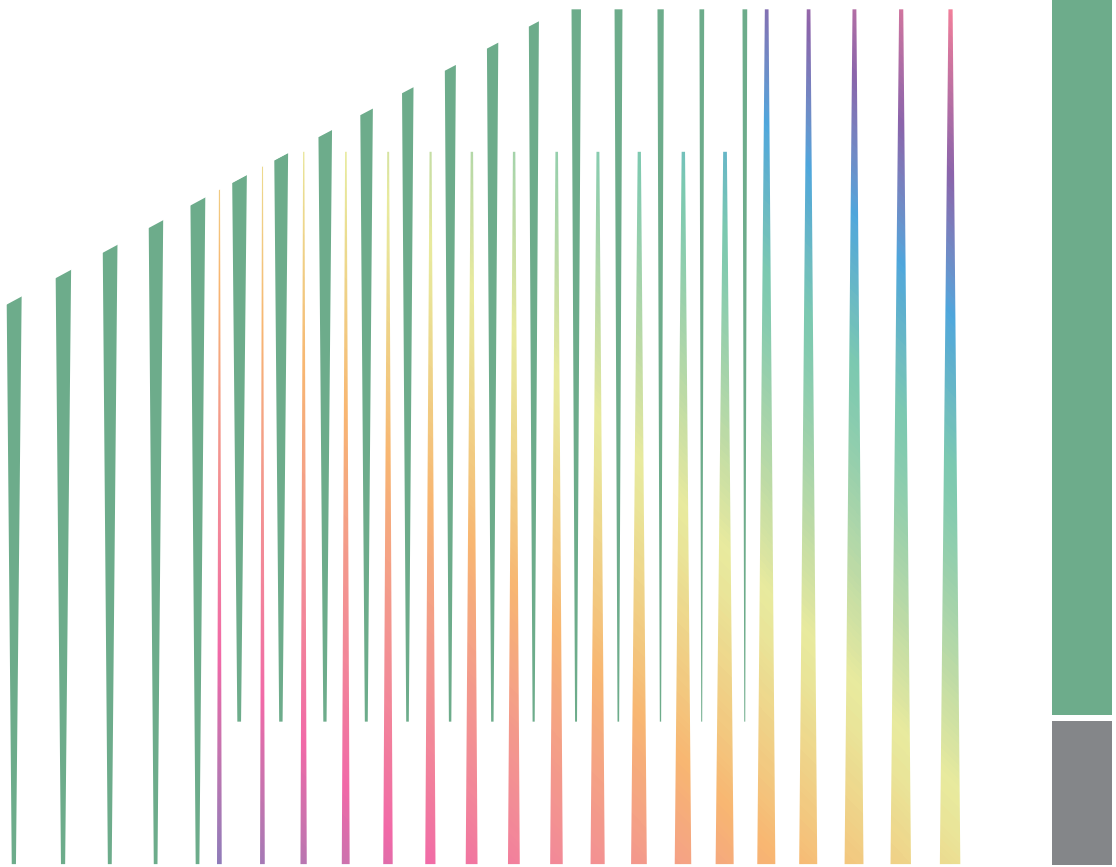


수시연구과제 2021-09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윤영훈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2021. 12.

윤영훈

서 언

본 연구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된 제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학술적 연구 활동의 지원 및 대중 전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해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술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이 주장되었던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경매에 내놓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및 문화재의 처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복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지속되었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물납 신청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물납의 인정 여부와 함께 해당 미술품 및 문화재의 적정 가치평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임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물납 신청대상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할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납을 신청하는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가치 및 감정가액의 평가과정과 물납을 허용하는 작품의 수준,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기관 및 활용 방안, 물납을 허용하는 상속인의 성격 및 물납 허용 한도, 기존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우선순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저자는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원내 논평자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원내외 토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연구의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평가자 두 분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존하고 관리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대중에게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시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합당한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수한 문화유산을 소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전시 및 교육하는 것은 내국인의 문화향유권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수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술적·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상속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납을 통해 상속인이 미술품 및 문화재로 납부한 재산은 기존 물납 재산과 같이 현금화를 통한 세수 충당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수용하여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하므로, 이를 통해 충당한 세액은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상속인의 미술품 및 문화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해당 재산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 여부 및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다. 또한 과세대상 재산의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을 위해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재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가치평가의 경우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 시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과정이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물납제도의 허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를 설계할 때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

고할 수 있다.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 현금 대신 상속받은 현물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인에게 조세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세 현금 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을 고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기대효과가 높더라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혜가 상속인에게 과다하거나 잘못 발생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경우 현행 물납 허용 재산과는 달리 물납 재산의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라면 제도 도입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얻기 어려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제도를 통해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기존의 물납 대상 재산항목에 이들을 추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존 및 연구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 공공수용의 성격으로 제도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의 경우에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미술품의 경우에는 생존하지 않는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 중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가치평가 및 감정평가를 거쳐 물납의 허용을 선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제혜택은 도입을 고려하는 물납제도와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물납으로 충당한 소장품은 처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귀속시켜 학술 연구 지원 및 전시 내역을 공공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물납으로 충당한 소장품은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과도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물납한도금액을 설정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한도액의 규모에 따라 조세지

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수행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출연과 비교하여 물납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인 물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납 재산에 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관련 현황	4
1. 상속세 과세표준	4
가. 상속재산가액	4
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7
다.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7
2. 상속세 물납제도	8
가. 상속세 물납제도 개요	8
나. 상속세 물납 현황	12
3. 미술품 및 문화재시장	15
가. 미술품시장 현황	15
나. 문화재시장 현황	19
4.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추진 현황	21
가.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찬반의견	21
나. 관련 법안 현황	23
III.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	26
1. 프랑스	26
2. 영국	27
3. 일본	29
IV.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사항	31
1.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31
가.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의 활용	31
나. 물납 대상 미술품 및 문화재의 범위	32
다. 물납 재산의 가치평가	35
라. 물납의 허용 요건 및 우선순위	36

2.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	37
가. 문화재의 상속세 세제혜택	37
나. 미술품 및 문화재 기증과의 비교	40
V. 정책적 시사점	43
참고문헌	45
부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표목차

〈표 II-1〉 국세목별 물납 현황	12
〈표 II-2〉 상속세의 재산 종류별 물납 현황	13
〈표 II-3〉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14
〈표 II-4〉 2019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 규모	15
〈표 II-5〉 2019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수 규모	16
〈표 II-6〉 공공영역 작품 구입금액 증감 현황	17
〈표 II-7〉 공공영역 작품 구입 수 증감 현황	18
〈표 II-8〉 2019년 국제경매의 한국작품 낙찰순위	19
〈표 II-9〉 소유자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20
〈표 II-10〉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구입 현황	20
〈표 II-11〉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 출품 현황	21
〈표 III-1〉 영국의 미술품 물납 현황	28
〈표 IV-1〉 상속세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황	37

그림목차

[그림 II-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5
[그림 II-2] 상속세의 재산 종류별 물납액 비중	14

I. 서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학술적 연구 활동의 지원 및 대중 전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는 세법 개정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서 상속자의 납세 편의성을 위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 도입을 추진하였고,¹⁾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복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미술품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함께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제도의 혜택이 주로 고액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여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대상 재산의 범위나 적용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²⁾

미술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이 주장되었던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재단의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예상 평가액 2조~3조원에 이르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처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났다. 이후 상속인은 개인 소유의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당수인 2만 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증된 작품 중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와 이중섭의 〈황소〉 등이 특별전시를 통해 일

1) 문화체육관광부(2018), p. 33.

2)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지속되었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설된 법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검토과정에서 본문에 추가하였다.

반에 공개되면서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일반대중의 향유 기회가 마련되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가 상속의 과정에서 개인에 매각될 경우 해당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어려움이 생길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인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외국의 자본에 매각될 경우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될 위험이 있다.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대상 재산이 되는데,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납세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미술품을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가능성 및 기한 내에 처분이 되지 않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체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화재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상속세 비과세 또는 징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문화재 보호와 은닉 문화재의 양성화를 위해 시작된 정책이었으나, 현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로 귀속시켜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문화재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세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문화재의 매각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조세의 물납제도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 납부방식에서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해 금전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로 귀속시켜 보존·관리하여 학문적 연구 환경의 제공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본다.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제도 설계 시 검토사항과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로 양현미(2017)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프랑스, 영국, 일본의 미술품 물납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미술품 물납제도의 공통점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방향을 국가적·지역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태완(2008)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상 물납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의 물납제도와 미국의 상속세 납부형태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문화재의 경우 개인에게 유지·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물납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영환(2020)에서는 입법론적 방향에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 도입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엽 외(2015)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조세물납제도의 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물납 신청요건의 구체적인 판단규정 마련, 물납의 적용 범위 조정, 동산의 물납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 및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사항을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과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관련 현황

본 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설계를 위하여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의 결정과정 및 현행 상속세 물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물납 대상 재산으로 고려하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시장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재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가치평가의 경우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 시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과정이므로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의 결정과정을 살펴본다. 현행 상속인의 미술품 및 문화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해당 재산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 여부 및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다. 또한 과세대상 재산의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을 위해 가치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현행 상속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를 설계할 때 허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이에 더해 미술품 및 문화재의 기본적인 시장 현황을 검토한다. 현재 미술품 및 문화재의 경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필요성 및 찬반의견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안 현황을 살펴본다.

1. 상속세 과세표준

가.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³⁾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⁴⁾

[그림 11-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자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기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기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lid=7720>, 검색일자: 2021. 7. 2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3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

상속세액의 계산은 [그림 II-1]과 같으며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며,⁵⁾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확인되는 감정가격·수용가격·공매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된다.⁶⁾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⁷⁾ 이에 따라 부동산,⁸⁾ 유가증권,⁹⁾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¹⁰⁾ 등을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세부항목에는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가 포함된다. 서화·골동품의 경우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¹¹⁾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하고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의뢰받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결정한다.¹²⁾ 감정평가심의회 평가대상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서화·골동품 중 점당 평균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¹³⁾ 감정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전문분야별 3인 이상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정평가위원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¹⁴⁾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 제2호

12)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2163호) 제3조(설치), 제6조(기능)

13)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평가대상)

14)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제1항

한 가액으로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심의서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¹⁵⁾

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총상속재산가액 중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국가기부 또는 공익법인 출연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의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제도 또한 제도 도입 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및 상속세 납부 방법 선택의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시 현행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상속재산가액 중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박물관 등의 공공단체에 유증하는 재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이 포함된다.¹⁶⁾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¹⁷⁾ 여기에는 종교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관련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과 함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해당된다.

다.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¹⁸⁾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

15)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평가액 결정 및 통지) 제1항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1항 제1호

화재를 말하며,¹⁹⁾ 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²⁰⁾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²¹⁾ 박물관자료는 박물관이 수집·연구·전시 등을 수행하는 역사·예술·과학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하며,²²⁾ 미술관자료는 미술관이 수집·연구·전시 등을 수행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²³⁾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문화재자료나 박물관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등으로 인해 인출(引出)하는 경우 즉시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한다.²⁴⁾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⁵⁾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및 증권, 토지 및 건물 등으로 해당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경우에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입해야 한다.²⁶⁾

2. 상속세 물납제도

가. 상속세 물납제도 개요

국세의 납부는 「국세징수법」²⁷⁾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3항 제3호

20) 「문화재보호법」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1항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2호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4호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2항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4항

26)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27)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물납이 가능하다. 조세 물납제도를 통해 과세당국은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납부의 편의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물납제도는 1950년 시행된 「상속세법」²⁸⁾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에 대해 물납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에 법인세,²⁹⁾ 1996년에 양도소득세,³⁰⁾ 1999년에 지방세인 재산세,³¹⁾ 2005년 종합부동산세³²⁾에 각각 물납제도가 시행되면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물납제도 도입 이후,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물납 재산의 처분에 따른 높은 국고 손실 가능성, 저조한 이용실적 등으로 인해 물납제도의 적용이 축소되었다. 세목별로 2016년에 법인세,³³⁾ 증여세,³⁴⁾ 양도소득세³⁵⁾ 및 종합부동산세³⁶⁾의 물납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상속세와 지방세에 물납제도가 남아있다. 물납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에도 물납허용자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물납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왔다.³⁷⁾ 대표적으로 2000년에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을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³⁸⁾ 2008년에는 비상장주식을 물납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다.³⁹⁾ 2020년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⁴⁰⁾

상속세의 경우 세제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납부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현금성 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28) 「상속세법」(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제29조

29) 「법인세법」(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

30)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31)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26조의3(물납)

32)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19조(물납)

33)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65조(물납) 삭제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73조(물납) 개정

35) 「소득세법」(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삭제

36)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405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19조(물납) 삭제

37) 이상엽 외(2015), pp. 19~22; 장영환(2020), pp. 10~12.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1항 제2호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 비상장주식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73조(물납)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8항,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둘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셋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⁴¹⁾

현행 상속세에서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⁴²⁾으로,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물납 가능 재산을 살펴보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물납의 충당이 가능하다.⁴³⁾ 물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유가증권으로는 거래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이 있다.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다.⁴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물납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다.⁴⁵⁾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⁴⁶⁾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① 국채 및 공채, ②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래소 상장주식, ③ 상속인 거주 주택을 제외한 국내 소재 부동산, ④ 유가증권 중 ①, ②, ⑤ 제외, ⑤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순이다.⁴⁷⁾

조세의 물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예외적인 수단으로서 물납 재산에 대해서 금전 납부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에 착안하며, 일반적으로 물납 재산의 사용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⁴⁸⁾ 따라서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은 처분을 통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한국자산관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제1항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1항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1항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48) 최명근(2002), p. 28.

리공사에 위탁한다.⁴⁹⁾ 물납 부동산의 경우 처분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처분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참가자의 자격 제한, 참가자 지명, 수의계약이 가능하다.⁵⁰⁾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 전자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선언한다.⁵¹⁾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⁵²⁾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50%를 최저한도로 10%씩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⁵³⁾

물납증권의 경우에는 매각 또는 운용할 수 있으며, 매각하는 경우 매출, 환매,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매각,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처분하며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시까지 보유한다.⁵⁴⁾ 물납된 증권은 물납한 본인과 가족, 친지 및 관계법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⁵⁵⁾ 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⁵⁶⁾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하지만, 물납증권의 경우에는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액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⁵⁷⁾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⁵⁸⁾

수탁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산업특성·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시기를 정한다.⁵⁹⁾ 상장증권은

49)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제3항 제1호

50)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제1항

51) 「국유재산법」 제43조 제2항,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항;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52)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1항

5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3항

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16조(매각방법)

5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물납 증권 처분 제한)

5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5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5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59)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21조(매각시기)

향후 증가전망 및 리스크 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 시기를 결정하며,⁶⁰⁾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⁶¹⁾

나. 상속세 물납 현황

〈표 II-1〉의 국세목별 물납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세 물납액은 2020년 기준으로 864억원이며 건수는 70건이다. 물납 건수는 2005년의 308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물납제도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물납 금액의 경우 2005년 2,228억원에서 2008년 8,47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864억원이 물납으로 납부되었다.

〈표 II-2〉의 상속세 재산 종류별 물납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세의 물납 건수와 금액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8건, 1,892억원이다. 2005년에 81건, 1,042억원 이후 2010년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 134건, 2,438억원으로 가장 많은 물납액을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에 70건, 864억원이 물납으로 납부되었다. 2000년대까지는 물납 재산으로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주식이 물납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I-1〉 국세목별 물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합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308	222,764	81	104,208	226	118,354	1	202	-	-	-	-
2006	251	178,992	44	66,705	199	110,270	1	58	7	1,959	-	-
2007	354	664,507	62	91,472	284	569,733	1	132	7	3,170	-	-
2008	503	847,890	98	122,801	392	722,382	-	-	13	2,707	-	-
2009	293	188,931	107	102,935	176	68,451	1	2,323	9	15,222	-	-
2010	211	184,908	89	70,505	110	105,797	3	1,298	9	7,307	-	-
2011	170	322,655	77	149,643	85	164,771	2	587	5	3,463	1	4,191

60)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21조 제1호

61)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21조 제2호

〈표 II-1〉의 계속

연도	합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232	223,133	105	93,583	118	122,220	-	-	9	7,330	-	-
2013	200	371,428	139	170,273	51	190,822	-	-	10	10,333	-	-
2014	183	330,242	129	171,879	46	138,679	-	-	8	19,684	-	-
2015	162	266,171	134	243,764	18	9,351	-	-	10	13,056	-	-
2016	102	145,839	85	133,984	4	1,091	-	-	13	10,764	-	-
2017	69	77,183	68	77,070	1	113	-	-	-	-	-	-
2018	62	64,410	62	64,410	-	-	-	-	-	-	-	-
2019	59	142,510	59	142,510	-	-	-	-	-	-	-	-
2020	70	86,378	70	86,378	-	-	-	-	-	-	-	-

주: 해당 연도에 물납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2.4.1 세목별 국제물납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2, 검색일자: 2021.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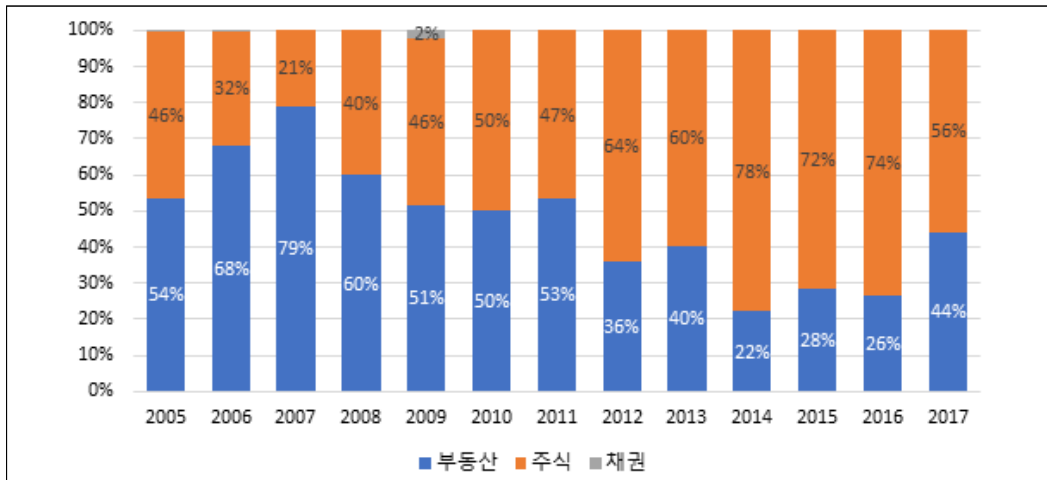
〈표 II-2〉 상속세의 재산 종류별 물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합계		부동산		주식		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81	104,208	-	-	-	-	-	-
2006	44	66,705	21	19,204	23	47,501	-	-
2007	62	91,472	39	42,457	23	49,015	-	-
2008	98	122,801	74	65,890	24	56,408	-	503
2009	107	102,935	89	70,104	17	32,680	1	151
2010	89	70,505	78	55,660	11	14,838	-	7
2011	77	149,643	61	89,501	16	60,142	-	-
2012	105	93,583	83	48,193	22	43,226	-	2,164
2013	139	170,273	113	85,255	26	85,018	-	-
2014	129	171,879	106	91,577	23	80,302	-	-
2015	134	243,764	105	87,407	29	156,357	-	-
2016	85	133,984	66	54,136	19	79,848	-	-
2017	68	77,070	46	17,007	22	60,063	-	-
2018	62	64,410	44	18,248	18	46,162	-	-
2019	59	142,510	40	37,544	19	104,966	-	-
2020	70	86,378	52	38,039	18	48,339	-	-

주: 해당 연도에 물납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2.4.1 세목별 국제물납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2, 검색일자: 2021. 7. 20.

[그림 II-2] 상속세의 재산 종류별 물납액 비중



주: 해당 연도에 물납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2, 검색일자: 2021. 7. 20.

물납된 재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즉시 처분을 통한 현금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기준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산이 부동산은 8,598억원(3,414건), 비상장주식은 5,675억원(345종목)으로 총 3,758건에 1조 4,39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⁶²⁾ 또한 <표 II-3>의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누적국고손실액이 1,507억원으로 나타났다.⁶³⁾ 이는 물납 시의 주식의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금 조세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 II-3>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물납금액	매각금액	차액
2016	1,722	1,009	-713
2017	1,868	692	-1,176
2018	318	572	254

62) 『연합뉴스』, 「매각 안된 물납 재산 1조4천억원…세금 손실 보고 팔기도」, 2021. 4.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57100001?section=search>, 검색일자: 2021. 12. 15.

63) 김태흠 의원실 보도자료,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손실 1500억원」, 2020. 10. 11., <https://blog.naver.com/ktheum/222113212103>, 검색일자: 2021. 12. 15.

〈표 II-3〉의 계속

연도	물납금액	매각금액	차액
2019	549	678	128
계	4,457	2,951	-1,507

자료: 김태홍 의원실 보도자료,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손실 1500억원」, 2020. 10. 11., <https://blog.naver.com/ktheum/222113212103>, 검색일자: 2021. 12. 15.

3. 미술품 및 문화재시장

가. 미술품시장 현황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⁶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미술시장 작품 거래 규모는 4,1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II-4〉의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주요 유통영역의 경우 화랑을 통한 거래 금액이 1,8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매회사 1,158억원, 아트페어 80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공영역을 통한 거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97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술관이 228억원, 미술은행이 32억원으로 추정된다.

미술은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이들 작품을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기업 등에 대여·전시 활동 등을 통해 미술문화 발전도모와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05년 2월 설립된 기관이다.

〈표 II-4〉 2019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금액(a)	중복금액(b)	계(a-b)	중복 내용	
주요 유통 영역	화랑 (475개)	185,161	5,768	179,393	건축물 미술작품 판매 작품
	경매회사 (9개)	115,820	-	115,820	
	아트페어 (49개)	80,256	76,942	3,314	화랑참가 아트페어 판매 작품
	소계	381,237	82,710	298,527	

6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표 II-4〉의 계속

구분		거래금액(a)	중복금액(b)	계(a-b)	중복 내용
공공 영역	건축미술작품	97,361	-	97,361	
	미술관 (256개)	22,828	6,601	16,227	현장구입제(아트페어) 구입 작품
	미술은행	3,247	689	2,558	
	소계	123,436	7,290	116,146	화랑·경매회사·아트페어 구입 작품
거래규모		504,673	90,000	414,6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p. 39.

미술시장을 작품 수 기준으로 보면 공공영역을 통한 거래는 주요 유통영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표 II-5〉의 2019년 미술시장 작품거래 수 규모를 살펴보면, 주요 유통영역의 경우 경매회사를 통한 거래가 2만 248점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화랑 1만 2,034점, 아트페어 9,732점이 거래되었다. 공공영역의 경우 미술관 1,576점, 건축물 미술작품 886점, 미술은행 314점이 거래되었다.

〈표 II-5〉 2019년 미술시장 작품 거래 수 규모

(단위: 점)

구분		거래 수(a)	중복 수(b)	계(a-b)	중복 내용
주요 유통 영역	화랑 (475개)	12,034	89	11,945	건축물 미술작품 판매 작품
	경매회사 (9개)	20,248	-	20,248	
	아트페어 (49개)	9,792	6,558	3,234	화랑참가 아트페어 판매 작품
	소계	42,074	6,647	35,427	
공공 영역	건축미술작품	886	-	886	
	미술관 (256개)	1,576	234	1,342	현장구입제(아트페어) 구입 작품
	미술은행	314	40	274	
	소계	2,776	274	2,502	화랑·경매회사·아트페어 구입 작품
거래규모		44,850	6,920	37,9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p. 39.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공공영역 미술시장 규모는 작품 구입금액이 약 1,234억원이며, 구입 작품 수는 2,776점이다. 공공영역의 작품 구입금액은 2010년대 들어 2015년까지 감소한 이후 상승하였다. <표 II-6>의 공공영역 작품 구입금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작품 구입 금액은 2009년 888억원에서 2015년 528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9년 1,23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은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2009년 668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으로 하락한 이후 2019년 97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2009년 138억원 수준에서 2019년 21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대학 및 사립 미술관은 2009년 70억원에서 2019년 1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은행은 2009년 13억원에서 2019년 32억원으로 작품 구입금액이 증가하였다.

<표 II-6> 공공영역 작품 구입금액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건축물 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		
				소계	국·공립	대학·사립
2009	88,804	66,792	1,252	20,760	13,789	6,971
2010	105,654	89,564	1,586	14,504	13,249	1,256
2011	98,303	83,557	1,510	13,236	11,733	1,504
2012	77,792	62,051	1,508	14,233	12,028	2,205
2013	61,592	58,718	1,674	12,070	9,477	2,593
2014	65,207	51,017	2,030	12,160	10,694	1,466
2015	52,832	34,323	2,750	15,759	13,883	1,876
2016	59,673	36,805	2,746	20,122	15,660	4,462
2017	110,250	87,932	2,750	19,568	16,634	2,934
2018	129,963	106,454	3,250	20,259	17,972	2,287
2019	123,436	97,361	3,247	22,828	21,122	1,7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p. 49.

공공영역의 미술품 구입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7>의 공공영역 작품 구입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작품 구입 수는 2009년 2,050점에서 2019년 2,776점으로 증가하였다.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9년 854점(41.7%)에서 2019년 1,153점(41.5%)으로 전체 구입 수의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2009년 816점에서 2019년 886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및 사립 미술관의 구입 수는 2009년 195점에서 2016년 1,565점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423점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은행은 2009년 185점에서 2019년 314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II-7〉 공공영역 작품 구입 수 증감 현황

(단위: 점)

연도	합계	건축물 미술작품	미술은행	미술관		
				소계	국·공립	대학·사립
2009	2,050	816	185	1,049	854	195
2010	2,264	852	247	1,165	566	599
2011	2,423	769	267	1,387	598	789
2012	2,542	619	281	1,642	902	740
2013	2,130	617	146	1,367	637	730
2014	2,124	490	241	1,393	625	768
2015	1,842	379	366	1,097	702	395
2016	3,348	319	367	2,662	1,097	1,565
2017	2,683	789	269	1,625	1,061	564
2018	2,948	901	344	1,703	1,177	526
2019	2,776	886	314	1,576	1,153	4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p. 49.

주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국내 미술관은 총 256개로 국립 1개, 공립 73개, 대학 14개, 사립 168개의 미술관이 운영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 62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57개, 서울 43개, 부산·경상 32개 등으로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미술관은 총 약 228억원, 평균 약 3억 3천만원의 금액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작품 구입 수는 총 1,576점, 평균 22.7점이다.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작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국·공립 미술관이 약 211억원, 대학 및 사립 미술관이 약 17억원으로 국·공립 미술관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품 구입 수 기준으로는 국·공립 미술관이 1,153점이며 대학 및 사립 미술관이 423점을 구입하였다. 미술은행의 경우 2019년에 19억 5천만원의 금액으로 총 186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198개 기관에 2,799점을 대여하여 총 9억 7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참고로 2019년 세계 미술시장의 거래총액은 약 74.7조원으로 추정되고, 미술품 거래량은 4,050만건을 기록하였다. 순수미술 경매시장의 2019년 낙찰 최고가액은 클로드 모네의 〈Meules(1891)〉로 약 1,290억원에 낙찰되었다. 한편 2019년 국제 경매에서 낙찰된 상위 한국작품은 모두 홍콩의 경매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표 II-8〉의 2019년 국제경매의 한국작품 낙찰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김환기의 작품이 5점, 이우환의 작품이 3점, 박수근과 박서보의 작품이 각 1점씩 낙찰되었다. 최고가 작품은 김환기의 〈05-IV-71 #200 (Universe)〉로 크리스티의 홍콩 경매에서 153억원에 팔리면서 한국미술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였다.

〈표 II-8〉 2019년 국제경매의 한국작품 낙찰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작품가격(억원)	경매회사(홍콩)
1	김환기	05-IV-71 #200 (Universe)	153.4	크리스티
2	김환기	Untitled	85.1	서울옥션
3	박수근	Children Playing Game	27.2	서울옥션
4	김환기	18-II-72 #221	25.7	서울옥션
5	이우환	East Winds	24.5	서울옥션
6	김환기	L' ENDROIT OU J' HABITAIS - The Place Where I lived	8.9	소더비
7	이우환	From Winds	8.6	소더비
8	이우환	From Line	7.1	서울옥션
9	박서보	Ecriture No.25-73	7.0	크리스티
10	김환기	Peony, Old Tree and Jar	6.0	서울옥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20, p. 258.

나. 문화재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경우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II-9〉의 소유자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63%인 1,518점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찰, 향교, 서원 등이 77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406건으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⁶⁵⁾

〈표 II-9〉 소유자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건)

문화재 유형	국가소유	민간소유				계
		사찰, 향교, 서원	법인, 사립대학	문중	개인	
국보	162	70	42	1	56	331
보물	734	701	248	50	350	2,083
계	896	771	290	51	406	2,414
상대비중	37%	32%	12%	2%	17%	100%

자료: 조승래 의원실 보도자료, 「국보·보물 문화재 3개 중 2개는 민간 소유」, 2017. 9. 28., <https://blog.naver.com/yuseong0413/221106904504>, 검색일자: 2021. 12. 15.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중 총 28건의 보물 문화재가 거래되었으며, 이 중 19건이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최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건, 2015년에 20건, 2016년에 4건, 2017년에 1건, 2018년에 2건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5건 미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경매시장에 나온 19건의 문화재 중 국립박물관이 총 9건의 문화재를 구입하였다.⁶⁶⁾ 2020년에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이 유찰된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론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매입하였다.

〈표 II-10〉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구입 현황

연도	서화		금속		기타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2016	65	175	6	21	18	59	89	255
2017	17	28	3	4	24	1,007	44	1,039
2018	159	248	8	8	3	3	170	259
2019	183	526	29	29	19	27	231	582
2020	1	6	2	2	6	6	9	14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연보』, 2016~2020.

65) 조승래 의원실 보도자료, 「국보·보물 문화재 3개 중 2개는 민간 소유」, 2017. 9. 28., <https://blog.naver.com/yuseong0413/221106904504>, 검색일자: 2021. 12. 15.

66) 이상현 의원실 보도자료, 「세계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 2,934건」, 2018. 8. 8., https://blog.naver.com/leesh_2018/221607123975, 검색일자: 2021. 12. 15.

한편, 국외 경매시장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연간 2천건 이상이 출품되고 있다. <표 II-11>의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 출품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국외 경매시장에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 292개소에서 2,934건이 출품되었다.⁶⁷⁾

<표 II-11>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 출품 현황

연도	국가 수(개국)	경매소 수(개소)	출품 문화재 수(건)
2014	18	220	2,732
2015	19	330	3,432
2016	19	322	2,823
2017	21	292	2,934

자료: 이상현 의원실 보도자료, 「세계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 2,934건」, 2018. 8. 8., https://blog.naver.com/leesh_2018/221607123975, 검색일자: 2021. 12. 15.

4.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추진 현황

가.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찬반의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존하고 관리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대중에게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시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합당한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수한 문화유산을 소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전시 및 교육하는 것은 내국인의 문화향유권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수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양과 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경우 불법적으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통한 소장품의 확보를 제외하면,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증

67) 이상현 의원실 보도자료, 「세계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 2,934건」, 2018. 8. 8., https://blog.naver.com/leesh_2018/221607123975, 검색일자: 2021. 12. 15.

을 통한 방법과 예산을 통해 직접 구입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기증의 경우 미술품 및 문화재 평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기증자에게 평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논의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전히 기증자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가의 미술품 및 문화재 소유자의 적극적인 기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0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약 41만 3,000여 점 가운데 기증품의 비중은 약 8.8%에 그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8,700여 점 가운데 기증품의 비중은 약 45% 수준이다. 소장품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은 기관의 예산을 활용한 소장품 확보 노력이다. 그러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구입하는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2021년 구입 예산은 각각 39억 7천만원, 48억원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구입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문화재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문화재는 상속인이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지 않는 이상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국가로 귀속시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술적·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상속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납을 통해 상속인이 미술품 및 문화재로 납부한 재산은 기존 물납 재산과 같이 현금화를 통한 세수 충당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수용하여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하므로, 이를 통해 충당한 세액은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는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부자감세를 위한 제도이며, 가치판단이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기업 총수와 같은 수집가에게도 해당되지만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재로 이들을 수집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유명 미술작가의 사후 상속인에게

남겨진 작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고액자산가만을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미술품 및 문화재는 물납 이후 처분을 통한 현금화의 목적이 아닌 국가가 보존·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전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을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으로 인해 소장품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해당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감정가액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소장품의 평가액만큼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물납 시 해당 평가액만큼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조세지원의 성격으로 본다면 소장품의 학술 연구 지원 및 공공 전시를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의 향유를 기대하는 조세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나. 관련 법안 현황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물납제도에서 미술품 및 문화재를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 여기에 서화·골동품 등의 미술품을 추가하는 법안,⁶⁸⁾ 문화재 및 미술품 등에 대한 물납 특례를 통해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는 법안,⁶⁹⁾ 서화·조각·사진·공예품 등 미술품과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물납을 허용하는 법안⁷⁰⁾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제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물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는 법안⁷¹⁾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위 법안의 경우 검토보고에서 상속세의 과세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9, 발의연월일: 2020. 11. 25.)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93, 발의연월일: 2021. 8. 3.)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2, 발의연월일: 2021. 4. 8.)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세금의 물납과 같은 예외적인 조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⁷²⁾

위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술품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정의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물납을 허용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에 물납을 통해 수납한 미술품 및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물납 가능 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원칙적으로 처분 및 현금화를 통한 조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미술품 및 문화재의 경우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로 귀속시켜 연구 및 전시 등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납을 통한 미술품 및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기존의 물납 대상 재산에 미술품 및 문화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기존 물납 허용 재산과는 다른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경우 현재 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등록문화재는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며 미술품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제도와 상속세의 문화재 물납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안의 발의 이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30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정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위원회 대안⁷³⁾이 제안되었다. 해당 제안에서는 부대의견을 통해 시행령 등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기존의 상속세 물납제도를 명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와 별도로 제73조의2(문화 등에 대한 물납)가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 발의연월일: 2020. 6. 30.)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9.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3613, 발의연월일: 2021. 12.)

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청된 물납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해당 문화재 등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제5항에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제6항에서는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칙을 통해 해당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

1. 프랑스⁷⁴⁾

프랑스의 경우 상속 과정에서 미술품이 분산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1968년 대물변제제도(Dation en Paiement)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 및 소유자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예술작품, 서적, 수집품, 문서 등을 물납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없애 주고 정부에는 공공 문화유산의 수준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처음에는 상속세에만 적용했던 것이 후에 공유세, 부동산세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현금, 수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책, 수집품, 문서 또는 해안 및 연안보존구역에 있는 건물 등을 물납의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정부의 연간 예산 규모로는 구입이 어려웠던 고가의 미술품들에 대해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보존 및 전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피카소미술관은 대물변제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은 작품들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천 점의 작품을 상속세 대신으로 납부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한 저택을 지정해 이 작품들로 1985년 피카소미술관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통한 관광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신청 시에 대상 작품에 대한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형식 심사를 거친 후 경제재정부(Le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로 보내진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부처 간 국가예술문화재 보존 심의위원회(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d'agrément pou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에 심사를 의뢰

74) 장영환(2020), pp. 24-37; 양현미(2017), pp. 81-84.

한다.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재정부에서 2명, 문화부에서 2명을 임명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예술적·역사적 가치와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화부 장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에게 승인 여부를 제안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위원회와 문화부 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 품목에 대한 물납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물납을 통해 국가로 귀속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해 문화부 장관은 해당 작품을 관리할 기관을 결정한다. 관리가 결정된 기관은 해당 작품을 소장품으로서 학술적 연구 활동 및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하며, 문화부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 영국⁷⁵⁾

영국의 대물변제제도(Acceptance in Lieu)는 납세의무자에게 미술품 및 주요 문화재를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문화유산을 공공 소유로 이전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1984년 상속법에서 미술품과 중요 문화재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예술품 대물변제제도는 대상 세목을 상속세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탁월하게 국가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상속세에 대한 물납 신청 물품에 대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산하의 영국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에 설치되어 있는 대물변제심의위원회(Acceptance in Lieu Panel)에 심의를 요청한다. 대물변제심의위원회는 물납 신청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독립적인 전문가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 또는 학자나 미술품 시장 관계자가 맡게 된다. 위원회는 해당 물

75) Art Council England(2017); 장영환(2020), pp. 38~47; 양현미(2017), pp. 84~86.

품이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시장가격으로 산출된 가치를 산정하고, 신청 물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협의한 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권고하고, 장관은 해당 물품을 물납 대상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물납 작품은 총리 또는 관련 부처의 장관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기관에 할당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물납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물납 작품에 대한 관리 기관의 선정은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은 후, 기존 작품과의 적합성, 공공 접근성, 보존관리 역량,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영국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처분을 통해 해당 물품을 현금화하는 것보다 해당 품목에 대해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게 된다. 물납을 통한 상속세의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물납의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물납제도는 문화기증제도(Cultural Gifts Scheme)와 합산하여 연간 4천만 파운드의 한도 내에서 미술품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표 III-1>의 영국 미술품 물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연간 물납의 허용 건수는 25~52건 내외이며, 물납세액은 해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연간 한도인 4천만파운드 이내에서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수납하고 있다. 또한 물납을 통해 정부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미술품 및 문화재의 물납세액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억 8,400만파운드인 반면, 물납 유물의 가치는 4억 6,120만파운드로 50% 이상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술품 및 문화재의 물납제도를 통해 오히려 국고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 III-1〉 영국의 미술품 물납 현황

(단위: 건, 백만파운드)

연도	물납 건수	물납세액	물납 유물 가치
2011	26	4.9	8.3
2012	25	20	31.3
2013	30	30	49.4
2014	27	30	44.3

〈표 III-1〉의 계속

연도	물납 건수	물납세액	물납 유물 가치
2015	29	25.8	37.4
2016	36	26.6	47.2
2017	44	25	39.4
2018	42	17.4	26.9
2019	46	33.6	58.6
2020	52	40	64.5
2021	36	30.7	53.9
계	393	284	461.2

주: 1. 각 연도 3월 말 기준

2. 2013년 이후는 문화기증제도(Cultural Gifts Scheme)와 합산

자료: Art Council England(2021), *Cultural Gifts Scheme & Acceptance in Lieu Report 2021*, 2021, p. 5.

3. 일본⁷⁶⁾

일본은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세의 징수과정에서 연부연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며, 물납 재산별로 총당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미술품의 경우 3순위인 동산에 해당되어 1순위인 국채 또는 부동산, 2순위인 유가증권에 비해 낮은 순위에 있어 사실상 물납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1998년부터 시행된 등록미술품 제도를 통해 상속세 물납의 특례조치를 두어 등록미술품이 물납의 1순위가 되어 실질적으로 물납이 가능해졌다.

등록미술품의 등록기준은 중요문화재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 또는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특히 뛰어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후 2021년 4월 이후 기준이 개정되어 제작자가 생존 중인 미술품 중 10년이 경과하고 이전에 미술관에서 공개된 이력이 있는 작품도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다. 등록절차는 미술품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신청 후 문화청 장관이 미술품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미술품은 미

76) 일본 문화청, 「등록미술품제도 소개」, https://www.bunka.go.jp/seisaku/bijutsukan_hakubutsukan/torokubijutsuseido/gaiyo/index.html, 검색일자 2021. 12. 15.; 장영환(2020), pp. 48~62; 양현미(2017), pp. 86~88.

미술관을 통해 공개된다. 2021년 기준 일본의 등록미술품은 총 87건(기간 종료 후 재 등록된 2건 포함)이며, 등록이 종료된 미술품이 42건, 공개가 진행 중인 미술품이 47건이다.

등록미술품에 선정되면 해당 미술품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미술관에 보관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가, 소유자에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속세 대신 물납이 가능하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물납 이후에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여 물납 미술품을 관리 및 전시하는 과정과는 다르게 일본은 등록미술품에 대한 공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물납이 가능하다.

등록미술품 소유자에게 상속사유가 발생하고 상속인이 물납을 신청하면, 문화청은 해당 작품에 대한 가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에 대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을 적용하며, 연부연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미술품 제도의 특례조치를 통한 상속세의 물납은 2006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사례가 2012년에 2건으로 등록미술품 제도를 통한 미술품의 물납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물납에 대한 등록미술품의 우선순위 특례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물납이 적은 이유는 물납의 신청조건이 상속세액 10억엔 이상이고, 연부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미술품으로 등록 후에는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고 미술관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V.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사항

1.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 현금 대신 상속받은 현물재산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상속인에게 조세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세 현금 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을 고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기대효과가 높더라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혜가 상속인에게 과다하거나 잘못 발생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의 활용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 목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처분을 통한 금전수익의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직접 보유하며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통해 대중 전시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는 현행 물납 재산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등에 귀속시키고 물납 재산의 연구 및 전시 내역을 공공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특징은 현행 물납제도의 허용 대상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 재산의 처분을 통한 조세수입의 확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 물납제도의 대상 재산에 미술품 및 문화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물납 우선순위의 조정 등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는 기존의 제도에서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항목에 이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제도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⁷⁷⁾

한편,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의 경우 적절한 감정평가가 전제된다면 국고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의 경우 처분의 목적이 아니므로 비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특수관계인의 저가 매매 등을 통한 조세징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물납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작품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물납제도를 활용하여 미술품 및 문화재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과도하게 많은 재원이 사용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같이 물납에 대한 연간 허용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간 4천만파운드의 연간 물납 허용 한도액을 설정하고 매년 이 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물납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부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연간 물납 허용 한도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수행을 검토할 수 있다.

나. 물납 대상 미술품 및 문화재의 범위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물납 대상 미술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은 신청 가능한 물납 미술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과세관청은 물납 대상 미술품의 해당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물납 가능 미술품의 정의가 필요하다.⁷⁸⁾ 현행 법령에서는 미술품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각 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의 경우 주로 재산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의미하며 해

77)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기존의 물납 관련 조항(제73조)과 별도의 조항(제73조의2)으로 신설되어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구분되어 시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78) 장영환(2020), p. 80.

당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과세를 위해 정의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위한 재산의 구분 중 서화(書畵), 골동품을 나열하고 있으며,⁷⁹⁾ 이에 대해 시행령⁸⁰⁾에서 구체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으로서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등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명시하면서⁸¹⁾ 시행령⁸²⁾을 통해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으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며,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 등으로 구분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미술품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미술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미술품”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을 의미한다.⁸³⁾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⁸⁴⁾

현재 미술진흥을 통해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⁸⁵⁾ 이 법안에서 “미술품”을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⁸⁶⁾로 정의하고 있다.

미술품과 달리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형태와 가치에 따라 잘 구분되어 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등을 말한다.⁸⁷⁾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 제2호

8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항

8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4항

8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제1항 제7호

84)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4조(취득) 제4항

85) 「미술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10, 발의연월일: 2021. 7. 14.)

86) 「미술진흥법안」 제2조(정의) 제2호

8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⁸⁸⁾

“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물 및 국보 등이며,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⁸⁹⁾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⁹⁰⁾

보물의 지정기준 중 회화·조각의 경우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으로, 여기에는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을 포함한다.⁹¹⁾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⁹²⁾ 국보와 보물 등의 지정절차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⁹³⁾

“등록문화재”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⁹⁴⁾ “일반동산문화재”란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⁹⁵⁾로 미술, 전적, 생활기술 분야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면서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⁹⁶⁾

문화재의 경우 물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른 구분 중 일정 범위로 결정할

88)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1항

90)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70조 제2항

91)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별표 1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92)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항

9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9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70조 제3항

95)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제1항

9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별표 3(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

수 있다. 현재 문화재의 물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내에서 물납 신청 가능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포괄하는 문화재의 범위에 근대 미술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에서 미술 분야의 예시에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유물의 예시로 회화류의 경우 전통회화와 종교회화뿐만 아니라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 제도에서 제작 후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⁹⁷⁾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문화재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화 작품인 〈부채를 든 자화상(1915)〉을 비롯하여 김환기의 순수 추상 작품인 〈론도(1938)〉 등을 포함한 5점의 근대회화 작품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중요성이 높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미술품의 경우 물납 신청 가능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서화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미술품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미술품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 중 국가로 귀속시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술품에 한해 선별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국고손실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절차를 참고한다면 미술품 물납의 세부 허용 기준으로 생존하지 않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 중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 물납 재산의 가치평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납 대상 품목인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가의 미술품 및 문화재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주로 감정가액을 통해 미술품 및 문화재의

97) 일반적으로 서양의 근대미술(Modern art)은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1860년대에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를 지칭하고, 현대미술(Contemporary art)은 추상적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1960년 이후를 가리킨다.

가치를 평가한다.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대상 재산의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물납 품목에 대한 가치평가 및 감정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납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상속세에서 미술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문가 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가액을 평가하고 있다.⁹⁸⁾ 문화재의 경우 상속세의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감정가액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물 및 국보 등의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라. 물납의 허용 요건 및 우선순위

현행 조세 물납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세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며, 물납 재산은 처분을 통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납제도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물납제도와 재산의 성격과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이하다.

한편, 현행 물납 허용 재산의 최종 목적이 매각을 통한 금전의 확보인 반면, 미술품 및 문화재의 물납제도의 경우 해당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사용가치에 주목하므로 공공수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금전적 가치 확보의 목적이 아닌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학술적 연구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도입 방향을 기존 물납제도의 허용 가능 재산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납제도와는 별도로 미술품 및 문화재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술품과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물납제도와 별도로 미술품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 제2호

및 문화재 물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물납제도의 신청 및 허가 과정에서 물납 담당 재산의 우선순위에서 미술품 및 문화재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미술품 및 문화재에만 한정하여 물납의 조건 및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2.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

가. 문화재의 상속세 세제혜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화재의 경우 성격에 따라 상속세 비과세 또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비과세 상속재산이며,⁹⁹⁾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¹⁰⁰⁾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의 범위에 포함시킬 시 기존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1〉 상속세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상속세 산출세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2010	1,526,624	114
2011	1,902,263	594
2012	2,051,345	160
2013	1,757,290	5
2014	2,251,527	-
2015	2,215,035	-
2016	2,800,229	5
2017	3,215,616	-
2018	3,165,187	33
2019	3,469,156	-
2020	4,895,038	-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6.2.2 상속세 결정 현황 II」,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2, 검색일자: 2021. 7. 20.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2호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1항 제1호

먼저 <표 IV-1>의 상속세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약 6억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징수유예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연도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나 미술품 등에 대한 징수유예의 활용이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의 문화재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한 상황에서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 동시에 문화재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문화재를 통해 중복 수혜를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혜택으로 오히려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지정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지 않는 이상 소유주는 상속인에 한정되거나 개인에게 매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소유의 지정문화재를 국가로 귀속시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지정문화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평가 과정이 필요 없고,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에 의해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므로,¹⁰¹⁾ 문화재의 매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지정문화재의 매수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개인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문화재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상속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¹⁰²⁾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 및 징수유예 혜택은 없애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감정가액의 평가를 통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¹⁰³⁾ 이를 통해

10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102) 이상엽 외(2015), p. 77.

103) 김태완(2008), p. 187.

문화재를 상속받은 개인에게는 상속세의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국가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속세법」이 최초 제정된 1950년에는 문화재 관련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았으나,¹⁰⁴⁾ 1978년 시행된 「상속세법」 일부개정에서 지정문화재 상속의 경우 동 상속 문화재에 대한 세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¹⁰⁵⁾ 단,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문화재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유예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다. 이어 1991년 시행된 「상속세법」 일부개정에서 상속세액 징수유예의 범위를 기존의 지정문화재에 대해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였다.¹⁰⁶⁾ 현행 법률은 1997년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¹⁰⁷⁾을 기초로 하며, 이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문화재자료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은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상속재산 중 문화재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한 이유는 당시 문화재의 현황 파악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및 양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¹⁰⁸⁾ 따라서 문화재의 현황 파악 정도 및 음성적 거래 빈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행 문화재에 대한 세제혜택의 역효과 등을 분석하여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징수유예 혜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시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문제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행 문화재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104) 「상속세법」(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정)

105) 「상속세법」(법률 제310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8조의3 신설

106)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8조의3 개정

107)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12조 제2호, 제74조

108) 김태원(2008), p. 186.

나. 미술품 및 문화재 기증과의 비교

상속재산 중 미술품은 전문가 또는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 시 상속인은 해당 미술품이 물납제도를 통해 상속세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과 기부를 통한 비과세 또는 공익재단에 출연을 통한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결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예시를 통해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을 통해 상속인이 얻는 이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본래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줄일 수 있으며, 미술품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액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상속 미술품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금전납부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⁰⁹⁾

상속세 납부예시: 상속재산 100억원 중 미술품(감정가액 30억원) 물납

-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중 미술품 감정가액 30억원
- 상속세 총 45.4억원 중 미술품 물납 30억원 및 15.4억원 금전 납부
- 총재산 감소분은 45.4억원이지만 물납을 통해 금전 납부액이 감소

한편, 절세를 위해 미술품의 기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의 성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 등의 공공단체에 유증하는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되고,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기부를 통한 비과세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은 기부 이후 해당 미술품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¹¹⁰⁾

109) 이하의 예시에서 계산한 세액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가족공제나 경비처리 등이 없다고 가정한다.

110) 물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예시: 상속재산 총 100억원 중 미술품(감정가액 30억원) 기부

- 30억원의 미술품이 비과세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70억원
- 상속세 총 30.4억원 금전 납부
- 총재산의 감소분은 60.4억원

만약 상속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미술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면서도 공익법인을 통해 미술품의 관리 및 운용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예시: 상속재산 총 100억원 중 미술품(감정가액 30억원) 공익법인 출연

- 30억원의 미술품이 과세가액 불산입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70억원
- 상속세 총 30.4억원 금전 납부
- 총재산의 감소분은 60.4억원이지만, 미술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총재산의 감소분은 30.4억원

물론 세법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나 부의 편법적인 상속 등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통해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공익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출연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인은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¹¹¹⁾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¹¹²⁾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공익목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2항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항

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앞의 사례에서 만약 미술품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법인 의무위반 시 증여세 납부예시:
상속재산 총 100억원 중 미술품(감정가액 30억원) 공익법인 출연 후 의무 위반

- 최초 30억원의 미술품이 과세가액 불산입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70억원
- 상속세 총 30.4억원 금전납부
-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 10.4억원 금전납부
- 총재산의 감소분 70.8억원, 이 중 금전납부액은 40.8억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미술품을 출연받아 해당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시로 해당 미술품을 대중에게 전시하거나 학술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 미술관에 출연하고, 해당 미술관이 그 목적에 전념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다면 출연 미술품의 공개적인 전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또는 미술품의 학문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초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미술품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적극적인 대중 전시 및 학술 연구 지원 활동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물납을 선택하는 것보다 상속인과 관계있는 공익법인의 출자를 통해 상속 미술품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낮춰 상속세액을 더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물납 미술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시행 중인 상속재산 중 물납 미술품의 가액에 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V.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와 관련된 제반 현황을 검토하고,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과 현행 상속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미술품 및 문화재의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의 경우 현행 물납 허용 재산과는 달리 물납 재산의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가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라면 제도 도입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얻기 어려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제도를 통해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기존의 물납 대상 재산항목에 이들을 추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존 및 연구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국가의 차원에서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 공공수용의 성격으로 제도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의 경우에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미술품의 경우에는 생존하지 않는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 중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가치평가 및 감정평가를 거쳐 물납의 허용을 선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제혜택은 도입을 고려하는 물납제도와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물납으로 충당한 소장품은 처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귀속시켜 학술 연구 지원 및 전시 내역을 공공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물납으로 충당한 소장품은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과도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물납한도금액을 설정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한도액의 규모에 따라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수행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출연과 비교하여 물납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인 물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납 재산에 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조세지원을 통한 문화진흥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예술적·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 및 미술품을 정부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 및 법인의 문화재 및 미술품 기부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으나, 낮은 소득공제 한도로 인해 혜택을 받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을 확보하는 것인데, 2021년의 관련 구입예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39.7억원, 국립현대미술관이 48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확보 노력과 함께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를 포괄하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확보를 통한 학술적 연구 활동의 지원 및 공공 전시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적정 조세 및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1년 12월 2일 통과된 법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물납신청된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물납의 인정 여부와 함께 해당 미술품 및 문화재의 적정 가치평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임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물납 신청 대상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할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납을 신청하는 미술품 및 문화재에 대한 가치 및 감정가액의 평가 과정과 물납을 허용하는 작품의 수준, 물납 미술품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기관 및 활용 방안, 물납을 허용하는 상속인의 성격 및 물납 허용 한도, 기존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우선순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연보』, 2016~2020.
- 김태완,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로 행복한 삶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 2018.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 2020.
- 양현미,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41집, 2017, pp. 67~101.
- 이상엽·송은주·김민경, 『물납제도 운용현황 및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 장영환,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2.

〈외국 문헌〉

- Art Council England, *Acceptance in Lieu*, 2017.
- _____, *Cultural Gifts Scheme & Acceptance in Lieu Report 2021*, 2021.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9078>,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국세징수법」,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224805&ancYd=20201229&ancNo=17758&efYd=20210101&nwJoYnInfo=>

- 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국유재산법」(제1775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23&ancYd=20201229&ancNo=17758&efYd=202101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142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941&ancYd=20210202&ancNo=31429&efYd=202102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00781>,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1896>,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73&ancYd=20200609&ancNo=17409&efYd=202106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809&ancYd=20210406&ancNo=31600&efYd=202106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294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175&ancYd=20201229&ancNo=31294&efYd=2020122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

siSeq=214345&ancYd=20200218&ancNo=17007&efYd=202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법인세법」(법률 제320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61&ancYd=19791228&ancNo=03200&efYd=198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533&ancYd=20151215&ancNo=13555&efYd=2016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법」(법률 제114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704&ancYd=19500322&ancNo=00114&efYd=1950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법」(법률 제310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713&ancYd=19781205&ancNo=03101&efYd=197812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718&ancYd=19901231&ancNo=04283&efYd=199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688&ancYd=19961230&ancNo=05193&efYd=199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3557호), <https://www.law.go.kr/LSW/lsIn>

foP.do?lsiSeq=177183&ancYd=20151215&ancNo=13557&efYd=2016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846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213011&ancYd=20191231&ancNo=16846&efYd=202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224835&ancYd=20201229&ancNo=17758&efYd=202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0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60436&ancYd=19991231&ancNo=16660&efYd=1999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83142&ancYd=20080222&ancNo=20621&efYd=2009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1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214253&ancYd=20200211&ancNo=30391&efYd=202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6호), <https://www.law.go.kr/LSW//lSIInfoP.do?lsiSeq=229469&ancYd=20210217&ancNo=31446&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https://www.law.go>.

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54415,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소득세법」(제5031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58170&ancYd=19951229&ancNo=05031&efYd=1996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소득세법」(제13558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177202&ancYd=20151215&ancNo=13558&efYd=2016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소득세법」(제17925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230189&ancYd=20210316&ancNo=17925&efYd=2021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소득세법 시행령」(제31659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231965&ancYd=20210504&ancNo=31659&efYd=2021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종합부동산세법」(제7328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66446&ancYd=20050105&ancNo=07328&efYd=200501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종합부동산세법」(제14050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181395&ancYd=20160302&ancNo=14050&efYd=201603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지방세법」(제5615호),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18339&ancYd=19981231&ancNo=05615&efYd=1999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1. 7. 20.

국가통계포털 KOSIS, 「6.2.2 상속세 결정 현황 II」,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I2, 검색일자: 2021. 7. 20.

_____,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21&conn_path=I2, 검색일자: 2021. 7. 20.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검색일자: 2021. 7. 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R0P0M6V3L0B0S9X5G8N4L5W6M5C2, 검색일자: 2021. 12. 2.

_____,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 발의연월일: 2020. 6. 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R0P0M6V3L0B0S9X5G8N4L5W6M5C2, 검색일자: 2021. 12. 2.

_____,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10, 발의연월일: 2021. 7. 1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1L0J7J0J5Y1R2Q4Q6Q1Z7D9W1C4, 검색일자: 2021. 8. 20.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3613, 발의연월일: 2021. 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N1X1L1J2H9P1B8E5L5T2X2B3N2N5, 검색일자: 2021. 12. 2.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93, 발의연월일: 2021. 8.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Q1V0N7D2X9M1H2N4W3X5W9A4E2B9, 검색일자: 2021. 12. 2.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9, 발의연월일: 2020. 11. 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

- do?billId=PRC_R2A0G1S1J2N5O1O8H2Q6R1G1Y4Q6R6, 검색일자: 2021. 12. 2.
-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2, 발의연월일: 2021. 4. 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H1P0E3D2J2S1U7P2N8J3R2W9W6Y8, 검색일자: 2021. 12. 2.
- 김태흠 의원실 보도자료,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손실 1500억원」, 2020. 10. 11., <https://blog.naver.com/ktheum/222113212103>, 검색일자: 2021. 12. 15.
- 『연합뉴스』, 「매각 안된 물납 재산 1조4천억원…세금 손실 보고 팔기도」, 2021. 4.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57100001?section=search>, 검색일자: 2021. 12. 15.
- 이상현 의원실 보도자료, 「세계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 2,934건」, 2018. 8. 8., https://blog.naver.com/leesh_2018/221607123975, 검색일자: 2021. 12. 15.
- 일본 문화청, 「등록미술품제도 소개」, https://www.bunka.go.jp/seisaku/bijutsukan_hakubutsukan/torokubijutsuseido/1395331.html, 검색일자: 2021. 12. 15.
- 조승래 의원실 보도자료, 「국보·보물 문화재 3개 중 2개는 민간 소유」, 2017. 9. 28., <https://blog.naver.com/yuseong0413/221106904504>, 검색일자: 2021. 12. 15.

부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저자약력

윤영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2021년 12월 27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7,000원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 S B N 979-11-6655-113-0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